放火의 特徵 및 動機

1. 방화피해

범 세계적으로 방화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방화는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은 방화를 단순히 재산상의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누군가의 재산이 화재로 파괴되었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방화는 폭력범죄이다. 방화범죄가 발생하면 사회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방화는 고립된 범죄가 아니며 사회 자체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주미 선진국의 화재통계에 의하면 방화(방화의심포함)가 화재원인의 첫번째인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액은 전체 화재피해의 1/3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일본도 방화가 전체화재의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동경의 경우에는 3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주택가나 차량 등의 연쇄방화로 가끔씩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1,928건의 방화화재가 발생하여 전체화재(22,043건)의 8.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회현상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방화 발생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곧 선진외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 방화의 특징

방화는 불을 지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고의적으로 발생된 화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방화는 영어로 arson, incendiarism 또는 mailcious igni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방화는 다른 범죄나 화재와 비교하여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방화의 원인, 즉 방화의 동기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방화의 동기는 원한, 보복, 사기 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밖에 흥미 목적으로 방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박물관에 방화한 어떤 사람은 환경 오염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방화했다고 한다. 이렇게 방화의 동기가 다양한데 유의해야 한다.
- 범인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범죄이다. 수사의 기본은 지문이나 혈흔 등의 물적 증거를 찾는데 있으나 방화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해 모든 증거가 파괴되기 때문에 범인 체포는 물론 체포된 범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방화는 일반적으로 은폐된 공간에서 행해져 화재 발견이 늦고, 휘발유나 신너같은 인화성 물질이 촉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범위가 크다.
- 재산을 대상으로 한 방화보다 인명에 대한 방화가 많고, 용도별로는 주택에 대한 방화가 많아 방화의 주요 동기가 원한이나 보복 등 정신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화재의 발생은 계절적인 측면에 좌우되고 있으나 방화 화재는 그 발생이 비계절적, 비주기적이다.

3. 방화의 동기 및 사례

가. 원한 · 분노 · 복수

방화의 주요 동기이다. 전체 방화의 2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원한·분노·복수에 의한 방화는 인간관계의 분쟁에 의해서 일어난다. 연인·부부·친구·가족간의 싸움, 건물주와 임대자,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분쟁, 이웃간의 마찰, 오너와 경영자의 불화 등 이 모든 것이 방화 동기의 근원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방화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서 만족을 얻는다.

- 절교를 선언한데 격분, 애인집에 방화
- 48세의 남자가 이혼한지 20년 후에 옛 부인집에 방화
- 부부 싸움 끝에 화가 난 남편이 거실에 있던 석유난로를 걷어 차 자기집에 방화
- 국민학교 2학년 어린이가 친구들의 놀림에 화가 나서 동네 승용차에 7차례 연쇄방화
- 18세의 공원이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자기가 다니던 공장 창고에 방화

나. 음주·약물 중독

술을 먹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사소한 일에 흥분하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화하는 경우로서 방화 동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 술을 먹고 나이트클럽에 간 사람이 촌놈이라고 무전박대하는데 화가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 나이트크럽 무대부에 뿌리고 방화. 16명 사망
- 29세의 남자가 5시간 동안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논 후에 여자 친구 집에 방화
- 36세의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자 술과 마약 상태에서 5차례 방화
- 20세의 남자가 무직인 상태에서 환각제를 복용하고 3채의 주택에 연쇄방화

다. 정신 문제

우울증, 도움 요청, 성격적 혼란, 정신질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부류의 방화자들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 31세의 남자가 가구점에 불을 질렀다.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였다.
- 15회의 연쇄방화 혐의로 기소된 한 남자는 정신병자였다.
- 17세의 정신질환자가 지루하고 심심하여 재목하치장에 방화

라. 경제적 이득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발생건수 측면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다. 방화가 미리 계획되고 일반적으로 촉진제가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물질적 손실을 초래한다. 방화의 대상이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차량 등에도 행해지고 있다.

- 호텔 주인이 병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자기 호텔에 방화
- 한 슈퍼마켓의 주인과 아들이 많은 빚에 쪼들리자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방화
-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난에 빠지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지하 술집에 신너를 뿌리고 방화
- 29세의 전화수리공이 엄청난 빚에 쪼들리자 보험금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자기집에 가솔린으로 불을 질렀다. 아내는 대피했으나 두 아들은 목숨을 잃었다.

마. 범죄 은폐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화가 종종 이용되고 있다. 횡령, 사기, 위조, 세금 회피, 도난 등 범죄행위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살인, 강도행위를 화재로 위장하기 위하여 방화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방화는 범죄자가 건물안에 있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범죄은폐 방화는 주변 인물이나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상속을 목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방화
- 31세의 여자가 친구를 죽이고 돈을 훔친 것을 감추기 위하여 범행 후 방화
- 27세의 여자가 자기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훔친 뒤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

○ 14세와 15세된 학생들이 자신들의 무단 결석 기록을 제거하기 위하여 방화

바. 방화광(pyromania)

불 지르는 충동을 느끼는 방화광은 심리적 불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방화광의 단 한가지 동기는 불 및 불과 관련된 사건에서 일종의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다. 방화광은 거의 항상 화재 현장에 남아서 사고를 확인한다. 방화광은 화염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만족을 얻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구경꾼들의 흥분과 소방관과 진화활동에서 만족을 얻기도 한다. 충동을 극복하지 못할 때 방화광은 적당한 대상물에 방화한다.

○ 19세의 임시 소방관이 타오르는 불길을 즐기기 위하여 헛간에 방화
○ 25세의 남자가 불을 질러 매스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방화, 159건의 방화와 절도로 종신형
○ 불을 보면 흥분하는 여자가 상습적으로 방화

사. 선동 · 테러리즘

사회불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시위나 노사분규 등에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방화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 학내 분규 중 학교에 방화
○ 동물 애호가인 두 사람이 고기 포장시설에 방화
○ 정치적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져 방화

아. 영웅 심리

환경이 제한되어 있고 생활이 무미건조할 때 일어난다. 상관이나 자기 가족에게 자신을 증명시켜 영웅이 될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방화를 하고 방화행위에 의하여 영웅이 되고 나면 발각될 때까지 방화를 계속한다.

○ 50세의 여자가 텔레비젼에 출연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두 아들을 죽였다.

자. 방화파괴자(vandalism)

주요한 방화 동기의 하나이다. 반달리즘 방화의 대부분은 청소년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청소년 반달리즘은 2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방화로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불량 청소년이고 또 하나는 갱이나 동료 집단의 반달리즘이다.

첫번째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은 반항이나 그 밖에 어떤 상징성이 있는 대상물에 방화한다. 학교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 범주에 속한 청소년들은 갱이나 동료 집단의 인정과 승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화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방화자들은 감지되지 않는 장소, 다른 사람들을 헤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물체에 불을 지른다.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건물, 빈차, 숲속이나 들판 등이 이들 방화자의 표적이 된다.

○ 15세된 2명의 청소년이 비디오를 보고 모방하여 방화
○ 17세된 2명의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학교에 방화
○ 18세의 고등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어 학교에 방화, 그 이전에도 지하철에 두차례 방화

영국의 Arson Prevention Bureau에 1991 ~ 1993년에 발생한 방화 화재 214건을 정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방화의 동기는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 원한 · 분노 · 복수 : 19%
○ 정신 문제 : 17%
○ 범죄 은폐 : 8%
○ 선동 · 테러리즘 : 2%
○ 방화파괴자(vandalism) 등 : 17%
○ 음주 · 약물 중독 : 17%
○ 경제적 이득 : 9%
○ 방화광(pyromania) : 3%
○ 영웅심리 : 1%
○ 기타 : 7%

우리나라는 통계 분류상 상기와 같은 방화 동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1993년도 국내 방화 화재 1,670건의 동기는 다음과 같다.

○ 가정 불화 : 18%
○ 싸움 : 12%
○ 정신 이상 : 6%
○ 비관 자살 : 14%
○ 주벽 : 7%
○ 기타 : 43%

〈참고 : 방화 죄에 대한 국내 법률〉

형법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에 규정되어 있다.

제164조(현주 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 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전 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5천원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延燒) 1. 제166조 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 안전거리

-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부분과 다른 건축물(방호대상물) 사이에 소방안전 또는 환경안전상 확보해야할 거리(수평거리)
- 여기에서 확보해야할 거리란 위험물 시설과 방호대상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필요 조건으로서,
  - 상호간에 다른 물건 등이 존치할 수 있으며
  -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 또한, 동일 구내에서는 안전거리가 배제된다.

• **안전거리 규제 대상 위험물시설** :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 **안전거리 확보 특례** : 옥내저장소 중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소 등 해당

• **안전거리의 계산** : 방호대상물의 외측에서 위험물 시설 외벽 까지의 거리(보유공지거리에도 적용)

□ 보유공지

-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부분의 주위에 확보해야할 공지
- 여기에서 공지란 백지의 토지를 말하며, 여기에는 어떤 물건 등도 놓여서는 안된다.

• 안전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의 규제 개념인데 대하여 보유공지는 공간의 규제 개념으로, 안전거리보다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 **보유공지 규제 대상 위험물시설** :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